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약자 지원 프로그램

A Study on Local Governments' Programs for Vulnerable Population

허 만 형*

Hur, Mann-Hyung

■ 목 차 ■

- I. 서 론
- II. 사회적 약자에 관한 이론
- III. 연구방법
- IV. 분석결과
- V. 결 론

본 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 관련 조례제정 현황을 지역별로 비교분석하고, 조례에 근거한 이 프로그램들이 사회적 약자의 사회적 배제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분석도 함께 실시하였다. 사회적 약자란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그리고 기타 그룹이며, 기타 그룹에는 다문화가정, 탈북주민, 비정규직, 제대군인, 성적소수자, 병력자를 의미한다. 분석 결과 사회적 약자 프로그램도 관심수준이 높은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이 있었다. 도입 수준을 보면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기초자치단체의 도입비율이 매우 낮았다. 다문화가정 지원의 경우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도입비율이 50%선에 근접한 상태이지만 나머지 프로그램은 그 비율이 20% 내외 수준이었다. 그러나 성적소수자 및 병력자 지원 프로그램은 전무한 상황이었다. 장애인 프로그램은 사회적 배제 완화와 연결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어서 사회적 약자 프로그램으로서의 적합성이 높았다. 그러나 여성이나 아동의 경우 폭력방지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없었다. 노인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효도수당처럼 대가족에 대한 지원은 있지만 조손가정의 사회적 배제완화 같은 프로그램은 취약한 수준이었다.

□ 주제어: 사회적 약자, 사회적 소수, 사회적 배제, 사회적 포용

*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논문 접수일: 2011. 11. 10, 심사기간(1차): 2011. 11. 11 ~ 2011. 12. 26, 게재확정일: 2011. 12. 26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plore local governments' program availability for vulnerable population based on their ordinance legislation information. In addition, this study conducted a simple content analysis whether or not these program included specifications alleviating social exclusion. In this study, social vulnerable population referred to the handicapped, women, children, the elderly, and other groups including international marriage couples, North Korean defectors, non-regular workers, veterans, homophiles and suffers from AIDS and a Hansen's bacillus. Veteran's program was the most frequently chosen program. Out of 228 local governments, some 50 percent have adopted the programs for international marriage couples, but those for North Korean defectors was around 20 percent. However, none adopted programs for homophiles and suffers from AIDS and a Hansen's bacillus. The most various programs have been developed for the handicapped, and most of these programs were closely related to the alleviation of social exclusion. Some 20 percent of local governments adopted a violence prevention program for women and children, but this program was the only one for them. Cash allowances for the elderly's longevity were available in about 25 percent of the local governments, however they were not related to the alleviation of their exclusion.

□ Keyword: vulnerable population social minority population, social exclusion, social inclusion

I. 서론

사회적 약자(vulnerable population)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구집단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위험성이 높은 인구집단이기도 하다. 사회적으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격리됨으로써 빈곤(poverty)과 박탈감(deprivation)을 동시에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서 단순한 사회복지서비스 대상그룹과는 차이가 있다(Percy-Smith, 2000; Sen, 2000). 사회복지서비스 대상그룹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단이라면 사회적 약자는 경제적 어려움에 더하여 사회적 박탈감과 기회의 상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저생계를 영위하도록 하는

경제적 지원 중심인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사회적 약자 지원 프로그램은 그 방향성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사회적 약자 프로그램은 사회적 배제 완화를 목적으로 하며 중앙정부의 시각에서 사회복지 프로그램 제공 방식으로 접근하기도 하지만 지역주민과 보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논리적 관점에서도 사회적 약자는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적 접근법으로 간주(Percy-Smith, 2000)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면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주요한 지방사무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으며, 여기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과 제도도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은 국제인권기구의 주요 관심대상일 뿐만 아니라 1993년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회의(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에서는 국가인권기구의 설립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을 권고한 바가 있다. 유엔의 사회권규약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는 한국정부를 포함한 회원국으로 하여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하도록 권고한 바가 있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2006년 6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권고안을 수립하였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약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책개발을 시도한 적이 없고 지역주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방식의 정책개발을 시도해왔을 뿐이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에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프로그램의 내용을 연구한 사례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현황과 내용에 대한 분석에 근거하여 사회적 약자 지원 프로그램이 사회적 약자의 사회적 배제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를 탐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정책제언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사회적 약자에 관한 이론

1. 사회적 약자의 의미와 대상인구

사회적 소수(social minority population), 사회적 약자(vulnerable population), 비혜택인구(disadvantaged population)라는 말로 표현되지만 모두 유사한 의미이다. 주류

의 외곽에 위치한 그룹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소수이고, 이들은 상처받기 쉬운 계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약자이며, 정책이 있어도 활용이 용이하지 않은 인구집단이라는 의미에서 비혜택 인구라고 지칭할 수 있다. 같은 인구집단을 두고 다른 시각에서 표현한 용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회적 배제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빈곤현상의 한 유형으로 이해하는 그룹(이정은·조미형, 2009; 강신욱 외, 2005)도 있다.

사회적 주류 그룹 이외의 인구집단을 사회적 약자로 분류한다.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남성을 제외한 모든 집단을 사회적 약자로 간주한다. 심신 일부의 기능 장애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 고령으로 경제활동에 참여가 어려운 노인, 미성년으로서 경제활동 참여를 제한받는 아동청소년, 그리고 남성을 제외한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간주하였다. 정부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사회복지서비스 대상그룹으로 분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그리고 여성이 가장 중요한 사회적 약자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 인구이지만, 이들 모두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다루어지지 않는다. 이상의 4대 사회복지서비스 그룹에 속하면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 사회적 약자(Sen 2000)이다. 따라서 4대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인구의 대부분은 사회적 약자에 포함되고 이 그룹 이외의 인구집단도 사회적 배제의 가능성이 높을 경우 사회적 약자에 해당된다.

넓은 의미의 사회적 배제는 일반시민의 정상적 활동(normal activities of citizens)에 제한을 받는 상태(Buchardt et al., 1999)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거래, 일상생활, 및 권리행사(exchange, practices, and rights) 제한을 받는 상태(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1997)로 설명할 수 있다. 사회적 배제의 결과로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차별대우, 박탈감, 격리, 불이익을 받거나, 다른 사람이나 집단으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Percy-Smith, 2000).

최근 우리 사회의 다원화 수준이 높아지면서 다양화의 수준만큼이나 사회적 약자 그룹도 다양화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4대 사회복지서비스 그룹 이외에도 다문화가정, 탈북주민, 비정규직 근로자, 한센병이나 선천성면역결핍증과 같은 병력인, 그리고 군인도 사회적 약자로 분류하여 그 인권이 보호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접근 방식이 사회적 약자 그룹을 분류하는 일반적 방법(Reichert, 2006)으로 간주되고 있다.

2. 사회적 약자 프로그램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은 불평등과 불이익은 반드시 빈곤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에서 출발(Kenyon, 2003)하였다. 사회복지의 주요 관심사로서 빈곤은 소득의 결핍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사회적 약자 프로그램은 사회적 배제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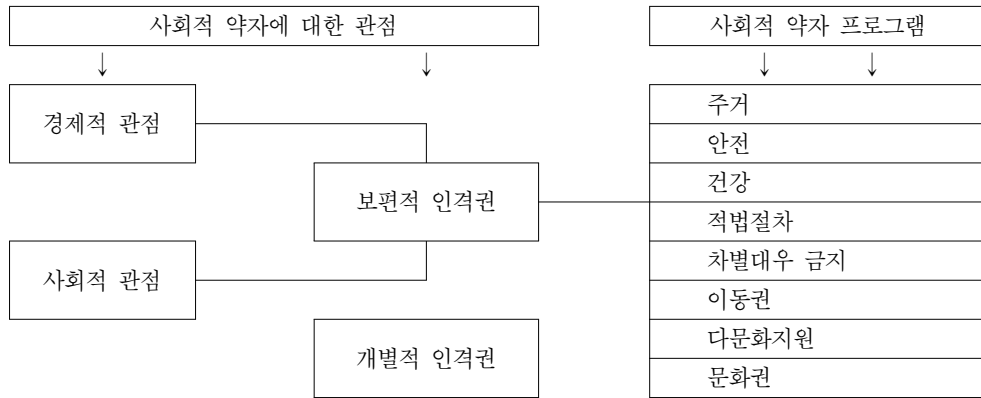
두 분야는 중첩되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사회적 약자 프로그램은 경제적 관점, 사회적 관점, 인권의 관점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 경제적 관점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의 다양한 급여 및 지원 프로그램으로 정의(National Academy of Social Insurance, 2009)하고, 사회적 관점에서는 주류사회에의 동참을 유도하는 다문화 교육 및 문화감응도 프로그램으로 범주화시킬 수 있다(Newman, 1973). 대체로 이 두 가지 관점에서의 사회적 약자 프로그램을 일컬어 복지권(조소영, 2009), 내용을 강조할 경우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고 말한다.

인권과 복지권은 중첩되는 부분이 많지만 동일개념일 수는 없다(조소영, 2009). 인권의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 프로그램은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인권에는 자유권, 생존권 및 단결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주거(housing), 안전(safety), 건강(health care), 적법절차(due process), 차별대우금지(no discrimination), 문화권(cultural right), 교육,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 그리고 참정권(political right)이 여기에 포함된다(Reichert, 2006). 인권은 사회구성원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보편(universality)적 인권뿐만 아니라, 국가나 단체 및 개인은 자신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각자의 인격과 개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개별(individuality)적 인권도 동시에 포함된다. 이상 9개 영역 프로그램 중에서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 관련 프로그램을 개별적 인격권과 관련된 프로그램이고, 나머지는 보편적 인격권 보장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다.

보편적 인격권과 개별적 인격권을 동시에 보장하는 인권 관점에서의 사회적 약자 프로그램의 범위가 가장 넓다. 보편적 인격권은 경제적 관점에서의 사회적 약자 프로그램과 사회적 관점에서의 사회적 약자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1>에서와 같이 보편적 인권 관련 프로그램은 경제적·사회적 관점에서의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개별적 인격권 관련 프로그램은 표현의 자유나 참정권과 같은 기본권을 중심이기 사회적 관점이나 경제적 관점에서의 사회적 약자 프로그램과 다소 거리가 있다. 개별적 인격권 관련 프로그램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선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 프로그램의 범주를 경제적 관점에서의 주거, 안전 건강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그 범주를 설정할 수 있고, 사회적 관점에서 적법절차, 차별대우 금지, 노인이나 장애인의 이동권, 다문화 지원, 그리고 기타 문화권 관련 프로그램으로 그 범주를 설정할 수 있다. 이같은 프로그램의 대상인구는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그리고 여성과 같은 주요 대상자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탈북주민, 비정규직 근로자, 한센병이나 선천성면역결핍증과 같은 병력인, 그리고 군인 등이 포함된다.

〈그림 1〉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점과 프로그램 범주



3. 사회적 약자 지원 프로그램과 제공주체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인권문제는 국내정책 이슈이기 이전에 국제적 정책이슈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기조는 중앙정부의 몫일 수밖에 없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각국의 인권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국제인권기구에 따르고 있다. 특히 유엔의 인권위원회(UN 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인권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1993년 개최한 세계인권회의(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를 개최하였고, 여기에서 비엔나 인권선언과 실행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이 채택되었다. 비엔나 선언에서 각국은 인류의 생존과 공동번영을 보장하는 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에 대한 정책기조는 국제적 요구에 부응한다는 관점에서 중앙정부가 담당할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도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제정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함으로써 정책기조 수립을 하고 있다. 독립기구이지만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틀 속에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조례 제정을 권고(조소영, 2009)함으로써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정상우 외, 2011).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기조에 따라 사회적 약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 조례에 의거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한 국가는 정책기조를 수립함으로써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같은 방식은 사회복지분야

에서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그리고 여성정책의 기초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사회적 약자 지원 프로그램 역시 이 네 그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를 광역과 기초로 구분할 경우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을 보다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그 주체로서 더 적합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 약자 지원프로그램을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를 근거로 그 내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4. 선행연구 분석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으로서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그리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은 편이지만 종합적 시각에서 사회적 약자를 주제로 다룬 국내의 선행연구는 많지 않았다. 사회적 약자를 주제로 한 연구 중에서는 도시시설 정비방안에 대한 연구(이영아, 1999)를 찾아볼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보육시설, 사회복지관에 대한 현황분석 중심이었고, 정책제언 역시 도시시설 확충을 위한 제언에 한정되어 있었다. 사회적 약자 지원 서비스의 제공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을 위한 제언을 중심으로 한 연구(조소영, 2009)가 있었지만 프로그램의 내용분석과는 거리가 있었다.

사회적 약자를 주제로 다룬 연구로서 일부 그룹을 대상인구로 한 논문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이 제공받을 수 있는 기업복지에 대한 연구(배화숙, 2005)를 비롯하여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적 갈등이슈의 관점에서 다룬 연구(김인영·박관영·이인희, 2008)와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라는 관점에서 그 원인을 분석한 논문(윤정향, 2003)이 있었다.

교통약자를 다룬 논문으로 장애인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교통만족도를 조사한 연구(이신해, 2008)뿐 아니라 이동권보장을 위한 첨단교통서비스 전략에 관한 연구(김원호, 2011)도 있었고, 교통약자의 환승경로탐색에 관한 논문(김응철·김태호, 2009)도 있었다. 이상 세 편뿐 아니라 교통약자 관련 논문은 대체로 도시학 및 도시계획에 대한 논문이 대부분이었다.

사회적 약자로서 다문화 가정의 문제를 다룬 논문도 많았지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실증 연구(김진욱, 2011)를 제외하고는 지역적 주제가 대부분이었다. 사회적 관점에서 지역사회 적응문제를 다룬 논문(곽병선·김희숙, 2009)은 한 편 정도 찾아볼 수 있었고, 또한 사회서비스 전달과정에 대한 연구(정광호·최슬기·장윤희, 2009)도 있었지만 대체로 부부간의 문제, 자녀의 적응문제(김순규, 2011) 등을 다루고 있었다.

현재 사회적 약자 지원 프로그램 제공의 중심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의 사회적 배제완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에 대한

연구 논문은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수립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조례제정의 현황을 기초로 지원 프로그램의 유형 및 내용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 관련 조례제정 현황을 지역별로 비교분석하고, 조례에 근거한 사회적 약자 프로그램의 내용이 지역별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여기에서의 사회적 약자란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그리고 기타 그룹으로 분류하며,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는 기타 그룹에는 다문화가정, 탈북주민, 비정규직, 그리고 세대군인을 포함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06). 사회적 약자 지원프로그램이 사회적 약자의 사회적 배제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내용분석도 함께 실시하였다.

사회적 약자 지원 프로그램 관련 조례제정 현황과 각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에 수록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명, 단체명, 그리고 내용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명 중심의 키워드 검색 방법을 활용하였다.

검색 후 도입단체의 수를 조사한 결과 <표 1>에서와 같이 4대 주요 사회적 약자 그룹의 경우에는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의 도입 종류도 가장 많았고, 합치면 그 수도 가장 많았다. 장애인을 교통약자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편의시설과 체육시설에 관한 프로그램을 도입한 자치단체가 있었고, 중증장애인지원과 장애인복지기금 프로그램을 갖춘 자치단체도 있었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출산지원 프로그램을 갖춘 단체도 있었다. 다음은 노인 관련 프로그램을 도입한 지방자치단체의 수가 총 75개 단체였다. 아동과 여성은 폭력예방 중심이었으며 이 두 그룹을 묶어서 조례를 제정한 수준이었다.

기타 사회적 약자 그룹에서는 군인 예우에 관한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도입하였고, 다음이 다문화가정 지원이었다. 탈북주민이나 비정규직 지원에 관한 프로그램을 채택한 기초자치단체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농촌총각의 결혼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간주하고 다수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었다. 성적소수자나 병력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채택하여 운영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찾아볼 수 없었다.

기초자치단체의 사회적 약자 지원 프로그램 제도도입 현황은 <표 1>에서와 같이 두 가지 관점에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특별시나 광역시 아래의 기초자치단체와 도내 기초자치단

체의 도입현황에 대한 비교분석과 시, 군, 구 단위 기초자치단체의 도입현황에 대한 비교분석이었다. 이같은 비교분석 방법을 실시함으로써 지역특성이 사회적 약자 프로그램 도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비교분석 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하여 통계적 의미에 대해서도 분석을 제시하였다.

<표 1> 사회적 약자 지원 관련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검색 키워드 및 비교분석 그룹

사회적 약자	프로그램	키워드	도입단체수		비교그룹
장애인	장애인교통약자	장애인, 교통약자	47		비교 1: 특별시·광역시 내 대비 도내 기초자치단체 도입현황 비교 비교 2: 대도시의 구, 도내 시, 그리고 도내 군단위 도입현황 비교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체육	40		
	장애인편의시설	장애인편의	43		
	장애인출산지원	장애인출산	38		
	중증장애인지원	중증장애인	23		
	장애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	33		
아동청소년	아동여성폭력	여성, 아동, 폭력	47		
여성					
노인	장수수당	노인, 장수	58	75	
	효도수당	노인, 효도	17		
기타	다문화가정지원	다문화, 결혼	110		
	탈북주민	탈북, 새터민	16		
	비정규직	비정규직	17		
	군인예우	군인	187		
	농촌총각결혼	결혼	34		
	성적소수자	동성, 게이	0		
	병력자	후천성면역, 에이즈, AIDS, 한센	0		

끝으로 내용분석을 질적분석 차원에서 실시하였다. 기초자치단체가 도입한 사회적 약자 프로그램은 지역 간 대동소이한지 아니면 어느 정도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과 함께 프로그램의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도입 프로그램이 사회적 약자의 사회적 배제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배제완화에의 기여여부를 판단한 근거는 주류사회에의 동참을 유인하는 내용의 포함 여부였다.

IV. 분석결과

1. 사회적 약자 지원 프로그램 도입현황 지역별 비교분석

사회적 약자 지원 프로그램 별로 도입 기초자치단체의 비율이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표 2>에서와 같이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 그리고 노인과 같은 주요 4대 사회적 약자 그룹 중에서는 장애인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노인 프로그램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기초자치단체가 도입한 노인 프로그램에는 장수수당과 효도수당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이 있었다. 연구대상이 된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58개 단체에서 장수수당을 도입하였고, 효도수당도 17개 단체에서 도입하였다.

장애인 이동권 관련 프로그램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47개로서 전체 228개의 20.6%, 장애인 체육시설에 관한 프로그램이 있는 단체는 40개로서 전체연구대상의 17.5%,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프로그램이 있는 단체는 43개로서 전체의 18.1%였다. 장애인출산지원의 경우 전체의 16.7%, 즉 38개 단체가 도입하였으며 나머지 190개 단체는 미도입 상태였다. 중증장애인 지원프로그램은 10.1%에 해당되는 2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입하였고, 나머지 205개 단체, 89.9%는 미도입 상태였다. 장애인복지기금은 14.5%에 해당되는 33개 자치단체에서 도입하였고, 나머지 85.5%에 해당되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미도입 상태였다.

아동 프로그램과 여성 프로그램은 별도로 채택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채택한 경우에도 통합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있었으며, 그 내용도 폭력예방이 전부였다. 전체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20.6%에 해당되는 47개 단체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었다.

기타 4개 사회적 약자 그룹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은 중에서는 다문화가정 지원프로그램과 군인예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비중은 매우 높은 반면에 탈북주민과 비정규직 대상 지원 프로그램의 도입 비중은 매우 낮았다. 특히 다문화가정과 군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의 도입비중은 4개 주요 사회적 약자 그룹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군인예우 프로그램을 도입한 지역은 연구대상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82.0%에 이르는 187개였으며,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을 갖춘 자치단체도 그 비중이 높아 48.2%에 이르고 있었다. 기타 4개 사회적 약자 그룹 중에서 비정규직 프로그램이나 탈북주민 지원프로그램을 갖춘 단체는 그 비중이 낮아 각각 7.5%와 7.0%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이 두 그룹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소외되어 있는 그룹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로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농촌총각을 일종의

사회적 약자 그룹으로 간주하고 이들의 결혼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 기초자치단체의 비율이 14.9% 수준이었다. 그러나 성적소수자와 병력자 관련 프로그램은 어떤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도입하지 않았다. 이 두 그룹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지원과 보호가 경시되는 인구집단임을 조례현황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약하면 4대 주요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할 경우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그룹은 장애인과 노인이었으며, 관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룹은 아동청소년 및 여성 그룹이었다. 아동청소년 및 여성 그룹은 하나로 묶어서 제도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기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주요 사회적 약자 그룹보다 높았다. 특히 다문화가정 지원과 군인예우 프로그램에서 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농촌총각의 결혼지원 프로그램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도 낮지 않은 수준이었다.

<표 2> 기초자치단체의 프로그램 별 도입 비율

사회적 약자 그룹	프로그램	있음		없음		비고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장애인	장애인교통약자	47*	20.6%	181	79.4%	* 37곳은 교통약자로 명명
	장애인체육시설	40	17.5%	188	82.5%	
	장애인편의시설	43	18.9%	185	81.1%	
	장애인출산지원	38	16.7%	190	83.3%	
	중증장애인지원	23	10.1%	205	89.9%	
	장애인복지기금	33	14.5%	195	85.5%	
아동	아동여성폭력	47	20.6%	181	79.4%	
여성						
노인	장수수당	58	25.4%	170**	74.6%	** 11곳은 폐지된 지역
	효도수당	17	7.5%	211	92.5%	
기타	다문화가정지원	110	48.2%	118	51.8%	
	탈북주민	16	7.0%	212	93.0%	
	비정규직	17	7.5%	211**	92.5%	** 16곳은 폐지된 지역
	군인예우	187	82.0%	41	18.0%	
	농촌총각결혼	34	14.9%	194	85.1%	
	성적소수자	0	0	0	0	도입사례 없음
	병력자	0	0	0	0	

[빈도는 해당 프로그램의 도입 기초자치단체 수, 비율은 전체 기초자치단체 대비 도입단체의 비율을 의미함]

특별시·광역시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와 도내 기초자치단체별로 사회적 약자 지원 프로그램 도입 현황이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에서와 같이 분석 결과 4개 주요 사회적 약자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모두 이 두 그룹 사이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점을 보였다. 그러나 4개 기타그룹의 경우 비정규직 관련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대도시의 기초자치단체가 농어촌지역의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프로그램 도입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탈북주민, 그리고 군인 관련 프로그램의 경우 대도시 기초자치단체와 농어촌 기초자치단체의 도입비중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비정규직 문제가 대도시에서 더 심각하며 이것이 정책에 반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 결과였다.

프로그램 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및 교통약자에 대한 프로그램 도입에 관하여 특별시·광역시보다 도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도입비중이 높았다. 도입유형도 달랐다.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모두 장애인이동편의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도입되었지만 도의 경우에는 교통약자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비중이 높았다.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장애인 이동권의 경우에는 장애인에 한한 프로그램이지만 교통약자 이동권에는 노인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이동권이 훨씬 포괄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애인체육시설의 경우에는 특별시와 광역시 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도입비율이 28.4%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도 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도입비율이 12.3%에 불과했다. 장애인편의시설의 경우에는 그 반대로 특별시·광역시보다는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도입비율이 높았다. 전자의 경우 비율이 12.2%인데 반해 후자는 22.1%였다. 장애인 출산지원의 경우 특별시·광역시보다는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도입비율이 낮았다. 그 비중은 각각 17.6%와 16.2%였으며 지역 간 약간의 차이가 있는 수준이어서 통계적 의미는 없었다.

중증장애인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특별시·광역시보다는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도입비율이 낮았다. 전자는 10.8%였고, 후자는 9.7%였지만 통계적 의미는 없었다. 장애인복지기금의 경우 중증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도입과는 달리 특별시·광역시보다는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도입비율이 높았다. 전자의 경우 6.8%였고, 후자는 18.2%였다. 또한 중증장애인 지원 프로그램과는 달리 두 지역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아동여성폭력예방 프로그램의 경우 특별시·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가 도 지역의 기초자치단체보다 도입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전자의 비중은 27.0%인데 반해 후자는 21.3% 수준에 불과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간주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도시 지역의 아동 및 여성폭력 문제가 농어촌 지역보다 다소 심각한 상황이라는 사실에 바탕을 둔 결과로 보인다.

장수수당의 경우 도 내 기초자치단체의 도입비중이 특별시·광역시 내의 기초자치단체 도

입비중보다 높았다. 전자의 경우 35.1%이었고, 후자의 경우 5.4%에 불과했다. 도의 경우 폐지의 비중은 5.2%인데 반해 후자의 경우 4.1%이었다. 도 지역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도 높고 폐지의 비중도 높지만 폐지의 경우 미미한 차이인데 반해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수준의 경우 그 도가 훨씬 높은 것이 특징이었다.

효도수당의 경우도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도입비중이 특별시·광역시 내의 기초자치단체의 도입비중보다 높았다. 전자의 경우 9.7%인데 반해 후자의 경우 2.7%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특히 특별시와 광역시의 도입비중은 5%도 되지 않는 수준이어서 도입 기초자치단체의 수가 매우 미미함을 할 수 있었다.

기타 사회적 약자 프로그램 중에서 다문화가정 지원의 경우 특별시와 광역시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도입율이 54.1%인데 반해 도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도입율은 45.5% 정도였다. 수치상으로는 대도시 지역의 도입비중이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탈북주민 지원프로그램의 경우 특별시·광역시 소재 기초자치단체의 도입비중이 10.8%로서 도 소재 기초자치단체의 도입비중인 5.2%보다 높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비정규직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특별시·광역시의 경우는 폐지가 많았고, 도 지역의 경우 도입이 많았다. 그래도 전자 지역의 도입 기초자치단체의 비중(10.8%)이 후자의 그것(5.8%)에 비해 높았다.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군인예우의 경우 특별시·광역시 내의 기초자치단체의 도입비중은 86.5%인데 반해 도내 기초자치단체 도입비중은 79.9%였다. 전자가 높지만 통계적 의미는 없는 수준이었다.

농촌총각결혼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특별시·광역시 내 기초자치단체보다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도입비중이 훨씬 더 높았다. 전자의 경우 전체 74개 단체 중 도입비율이 2.8%에 불과한 반면에 후자의 경우 전체 154개 단체 중 그 비율은 26.2%에 이르고 있었다. 도내 기초자치단체가 특별시·광역시 내 기초자치단체보다 농어촌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도입에 지역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두 그룹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지역을 대도시, 중소도시, 그리고 농어촌으로 나누어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대도시는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 “~구”로 지칭하는 기초자치단체를 의미하고, 중소도시는 도 지역에서 “시”로 지칭되는 기초자치단체를 의미하며, 도 지역에서 “~군”으로 지칭되는 기초자치단체를 의미한다.

〈표 3〉 프로그램 도입비중: 특별시·광역시와 도내 기초자치단체 간 비교

영역	프로그램	광역단체구분	도입여부			합계	$\chi^2(df)$ (Prob.)	기타의 의미	
			없음	있음	기타				
장애인	장애인교통약자	특별시·광역시	68	6	0	74	23.398(2) .000	교통약자	
		도	113	4	37	154			
	장애인 체육시설	특별시·광역시	53	21		74	8.890(1)	0.003	
		도	135	19		154			
	장애인 편의시설	특별시·광역시	65	9		74	3.211(1)	0.073	
		도	120	34		154			
	장애인출산지원	특별시·광역시	61	13		74	0.064(1)	0.800	
		도	129	25		154			
	중증장애인지원	특별시·광역시	66	8		74	0.063(1)	0.802	
		도	139	15		154			
	장애인복지기금	특별시·광역시	69	5		74	5.271	0.022	
		도	126	28		154			
	아동	아동여성폭력	특별시·광역시	54	20		74	2.753(1)	0.097
	여성		도	127	27		154		
노인	장수수당	특별시·광역시	67	4	3	74	24.218(2)	폐지	
		도	92	54	8	154	0.000		
	효도수당	특별시·광역시	72	2		74	3.588(1)	폐지	
		도	139	15		154	0.058		
기타	다문화가정지원	특별시·광역시	34	40		74	1.480(1)	0.224	
		도	84	70		154			
	탈북주민	특별시·광역시	66	8		74	2.416(1)	0.120	
		도	146	8		154			
	비정규직	특별시·광역시	55	8	11	74	12.875(2)	폐지	
		도	140	9	5	154	0.002		
	군인예우	특별시·광역시	10	64		74	1.484(1)	0.223	
		도	31	123		154			
	농촌총각결혼	특별시·광역시	72	2		74	12.872(1)	0.000	
		도	122	32		154			

[표에서 도입여부 아래의 수는 해당 프로그램의 도입, 혹은 미도입 기초자치단체 수를 의미하고, 기타 아래의 수치는 표 좌측에서 교통약자, 혹은 폐지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함]

장애인 이동권의 두 가지 유형 중에서 〈표 3〉에서와 같이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교통약자 프로그램을 대체로 도입하는 경향이 있었고, 대도시의 경우에는 장애인 이동지원 프로그램 도입

비중이 높았다. 특히 대도시의 교통약자 중심의 도입 지역이 전무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장애인체육시설의 경우에는 대도시의 도입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이 중소도시였으며, 농어촌지역이 가장 낮았다. 도입비율은 각각 29.2%, 19.2%, 6.0%였다. 지역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장애인편의시설의 경우에는 중소도시가 가장 높았고, 다음이 농어촌이었으며, 대도시가 가장 낮았다. 각각의 도입비율은 중소도시 30.1%, 농어촌 15.7%, 그리고 대도시 11.1%였다. 이같은 지역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장애인출산지원의 경우 중소도시의 도입비중이 가장 높은 23.3%, 중소도시는 16.7%, 그리고 농어촌은 10.8%였지만 지역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중증장애인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중소도시의 도입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대도시였으며, 농어촌의 도입비율이 가장 낮았다. 중소도시의 경우 그 비율이 15.1%, 대도시는 11.1%, 그리고 농어촌의 경우는 4.8%였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농어촌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소외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책도입 측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애인복지기금의 경우 중소도시의 도입 비율이 가장 높아 24.7%에 이르렀고, 다음이 농어촌으로서 12.0%였으며, 가장 도입비율이 낮은 지역은 대도시로서 6.9%였다. 지역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아동·여성폭력 예방의 경우 대도시의 도입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이 중소도시, 농어촌이 가장 낮았다. 대도시 27.8%, 중소도시 17.8%, 농어촌은 16.9%였다. 이 결과는 아동이나 여성 폭력 문제가 중소도시나 농어촌보다는 대도시에 집중적으로 조명되는 현실을 보여주는 프로그램 도입 경향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다만 이같은 지역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노인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장수수당의 경우 도입비중은 농어촌 지역의 기초자치단체는 42.2%, 중소도시는 27.4%, 대도시의 경우에는 4.2%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효도수당의 경우에는 중소도시 15.1%, 농어촌 4.8%, 대도시의 경우 2.8%였다. 대도시의 노인문제보다 중소도시나 농어촌의 노인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분석결과였다. 두 개의 노인지원 프로그램 모두 지역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기타 사회적 약자 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다문화가정 지원은 대도시가 54.2%로 가장 높았다. 군 단위는 48.2%였고, 중소도시의 도입비중이 가장 낮은 42.5%였다. 그러나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탈북주민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대도시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중소도시와 농어촌 순이었다. 대도시는 11.4%, 중소도시는 8.2%, 농어촌은 2.4%였다 통계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표 4> 프로그램 도입비중: 구단위, 시단위, 군단위 비교

영역	프로그램	지역구분	도입여부			합계	$\chi^2(df)$ (Prob.)
			없음	있음	기타		
장애인	장애인교통약자	대도시 구	66	6	0	72	28.142(4) .000 [기타: 교통약자]
		중소도시 시	48	3	2	73	
		농어촌 군	67	1	15	83	
	장애인체육시설	대도시 구	51	21		72	14.473(2) .001
		중소도시 시	59	14		73	
		농어촌 군	78	5		83	
	장애인편의시설	대도시 구	64	8		72	9.446(2) .009
		중소도시 시	51	22		73	
		농어촌 군	70	13		83	
	장애인출산지원	대도시 구	60	12		72	4.331(2) 0.115
		중소도시 시	56	17		73	
		농어촌 군	74	9		83	
	중증장애인지원	대도시 구	64	8		72	4.620(2) 0.099
		중소도시 시	62	11		73	
		농어촌 군	79	4		4	
	장애인복지기금	대도시 구	67	5		72	9.808(2) 0.007
		중소도시 시	55	18		73	
		농어촌 군	73	10		83	
아동	아동여성폭력	대도시 구	52	70		72	3.321(2) 0.190
여성		중소도시 시	60	13		73	
		농어촌 군	69	14		83	
노인	장수수당	대도시 구	67	3	2	72	32.404(4) 0.000 [기타: 폐지]
		중소도시 시	48	20	5	73	
		농어촌 군	44	35	4	83	
	효도수당	대도시 구	70	2		72	9.251(1) 0.010
		중소도시 시	62	11		73	
		농어촌 군	79	4		83	
기타	다문화가정지원	대도시 구	33	39		72	1.988(1) 0.370
		중소도시 시	42	31		73	
		농어촌 군	43	40		83	
	탈북주민	대도시 구	64	8		72	4.711(2) 0.095
		중소도시 시	67	6		73	
		농어촌 군	81	2		84	
	비정규직	대도시 구	53	8	11	72	14.540(4) 0.006 [기타: 폐지]
		중소도시 시	67	3	3	73	
		농어촌 군	75	6	2	83	
	재향군인예우	대도시 구	10	62		72	10.998(2) 0.004
		중소도시 시	22	51		73	
		농어촌 군	9	74		83	
농촌총각결혼	대도시 구	71	1		72	29.629(2) 0.000	
	중소도시 시	66	7		73		
	농어촌 군	57	26		83		

[빈도는 해당 프로그램의 도입 기초자치단체 수, 비율은 전체 기초자치단체 대비 도입단체의 비율을 의미함]

비정규직의 경우 대도시의 경우 도입 비중은 가장 높았다. 11.1%, 중소도시의 경우 4.1% 농어촌의 경우 7.2%였다. 폐지의 경우 대도시가 가장 높았다. 대도시 15.3%, 중소도시 4.1%, 농어촌의 경우 2.4%였다. 비정규직 프로그램 도입비율은 대도시가 높고 나머지 지역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군인예우의 경우 농어촌 89.2%, 대도시 86.1%, 중소도시 70.1%였다.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도입비중이 높고, 대도시 지역으로 갈수록 도입비중이 낮은 지역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농촌총각 결혼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농어촌 지역의 도입비중이 가장 높은 45.6%였고, 다음이 중소도시로서 비율은 10.6%였고, 대도시는 1.4%에 불과했다. 프로그램 자체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미혼 남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농어촌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도입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 간 이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2. 사회적 약자 지원 프로그램 내용분석

교통약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하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의미한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는 교통약자 지원 프로그램으로 두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채택하고 있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제도가 그 하나였고, 다른 하나는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제도였다. 대체로 후자보다는 전자를 많이 채택하고 있었다. 전자에서는 교통약자 범주를 장애인뿐만 아니라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그리고 어린이를 포함하지만 후자는 장애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장애인체육시설에 관한 지원 프로그램은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채택된 서비스로서 단체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및 동호회 육성 및 지원,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교류,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그리고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지역 간 대동소이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채택된 제도로서 지역 간 큰 차이가 없었다.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나는 대상 시설의 착공 또는 건축허가 이전 편의시설 부문 설계도서 점검이었고, 다른 하나는 대상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가 진행 중인 때의 점검이었다. 장애인복지

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을 한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출산지원금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고 지원하고 있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자립지원이 대부분이었지만 일부에서는 목욕탕지원이나 교통도우미에 한정하기도 했다. 자립지원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인 경비지원, 장애인의 주택보급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교통비 지원, 장애인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활동비 지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훈련비 지원,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 등 지원,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지원, 장애인의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지원, 자녀 양육활동에 대한 지원, 장애인의 직업알선 등 사업체 참여 지원, 그리고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으로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단체의 행사·운영비 지원,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세미나·교육비 지원,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위한 사업비 지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비 지원, 그 밖에 기금의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외에는 사용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고 있었다.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는 대동소이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다.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프로그램은 때때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프로그램으로 명명되기도 하지만 내용상의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모두 「아동복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여성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다. 차이가 있다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차이였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역에서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아동·여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시설, 장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으로 그 내용을 구체화시키고 있었다.

기초자치단체는 「노인복지법」규정에 근거하여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제공함으로써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다. 대체로 85세 이상의 노인이 대상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9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도 있었다. 장수수당 지급방식도 다양했다. 5년 단위로 90세 50만원, 95세 70만원, 100세 100만원을 지급하는 지역(대구 달성군)이 있었고, 85세부터 매달 3만원을 지급하는 지역(경기 안산시)도 있었으며, 매월 5만원을 지급하는 지역(전남 무안군)도 있었다.

효도수당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가정을 대상으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 의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채택된 프로그램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적 약자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건전 풍속과 관련된 프로그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대상가정은 4세대 가정인 경우도 있었고, 3세대 가정인 경우도 있었다. 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3만원을 지급하는 지역(전남 여수시)도 있었고, 효도대상자가 1명일 경우에는 월5만원 2명일 경우는 8만원을 지급하는 지역(충북 영동군)도 있었으며, 6개월에 5만원을 지급하는 지역(경기 수원시)도 있었다.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였지만 충남 부여군과 예산군에서는 자녀입학 등에 관한 조례로 명명함으로써 그 지원 범위가 좁았다. 또한 전남 강진군은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조례로 명명함으로써 정착지원금을 제공에 한정하는 곳도 있었다.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명명한 지역에서는 대체로 7개 사업 단위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었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응 정보 제공과 교육 및 직업훈련사업,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에 관한 사업,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다문화가족에 대한 임신출산 지원 및 아동 보육 및 교육사업,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사업,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정리하고 있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결혼이민자 중에서 모범된 가정을 선발하여 친정 보내주기 항공료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었다.

탈북주민 지원 프로그램은 이들의 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지원범위는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및 경제교육,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 적응,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과 필요한 경우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이 프로그램을 채택한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지역 간 차이를 찾기가 어려웠다. 차이가 있다면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기도 하고 포괄적으로 정하기도 한다는 점이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규정은 세 가지 유형을 가지고 있었다. 해당 자치단체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사관리규정과 차별대우 금지에 관한 프로그램, 해당 자치단체 내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 내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을 포함하는 기업 및 조직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불안, 저임금, 불합리한 차별대우의 시정과 같은 프로그램이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유형이 대부분이었지만 전북 전주시의 경우에는 세 번째 유형을 채택하고 있었다. 전주시는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내 비정규직센터를 설치하고 이 센터에서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사업,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 비정

규직 정책교육사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사업, 기타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해놓고 있었다.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은 지역별 차이가 거의 없었다.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을 하거나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하는 사업 및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한 사업이 중심이었다. 또한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기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프로그램은 국제결혼에 소요 경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중심이었다. 1회에 한하여 1,000만원을 지급(경기 양평군), 1회에 한하여 500만원(전남 화순군), 국제결혼 경비지원으로 정해놓고 구체적인 액수는 정하지 않은 지역(충남 금산) 등 다양한 내용이 있었다. 구체적인 액수는 정하지 않고 상한선을 600만원으로 정해 놓은 지역(경남 산청군)도 있었다. 지원 대상은 35세 이상 50세 미만의 농촌거주 미혼남으로 정한 지역(경기 양평군, 전남 화순군)도 있었고, 연령의 상한선을 정하지 않은 지역(충남 금산군)도 있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완화하고,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을 유인하는 내용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 배제완화 프로그램으로서의 적합성 여부 분석을 실시하였다. 장애인 관련 6개 프로그램은 모두 장애인의 불편을 완화함으로써 주류사회에의 동참을 유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거나, 체육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편의시설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거나, 출산지원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에게 별도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주류사회에의 동참과 연결되어 있었다.

여성·아동 프로그램은 폭력방지 및 예방 프로그램을 통하여 적합성이 높았지만 장수수당과 효도수당은 주류사회에의 동참유인보다는 그 장수에 대한 기념 및 효도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강하여 사회적 약자 프로그램으로서의 적합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문화가정과 탈북주민 지원은 경우 모두 정착지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포용과 연계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자녀교육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교육 지원을 통한 사회적 포용으로 그 접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 범위가 좁아졌을 뿐이지 사회적 포용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비정규직 지원의 경우 지역내 거주하는 비정규직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사 및 복무규정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 프로그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전주시에서는 지역내 거주 비정규직 주민에 대한 지원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 배제 완화 프로그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오랫동안 일반사회와 격리되어 생활한 재향군인에 대한 사회적 포용의 성격이 나타났다. 그러나 농촌총각 결혼지원의 경우 농촌총각의 편에서 보면 정상적인 가정일 일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사회적 포용 프로그램으로서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지원대상인 농촌총각의 경우 그 연령이 35에서 50세이거나 연령 상한선을 두지 않음으로써 국제결혼으로 이주해오는 여성들의 편에서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3. 요약

사회적 약자 프로그램도 관심수준이 높은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이 있었다. 장애인, 재향군인, 노인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관심수준이 높았지만 성적소수자와 병력자는 사회적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프로그램이 전무한 수준이었다.

장애인 프로그램은 장애인 이동권, 체육시설, 편의시설, 출산지원, 중증장애인지원, 복지기금 등 6개로 가장 다양했다. 지역을 특별시·광역시 내 기초자치단체와 도내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하여 비교할 경우 전자는 장애인 이동 중심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고, 체육시설, 출산지원, 중증장애인 지원 프로그램에서 후자보다 도입비율이 높았다. 반면에 도내 기초자치단체는 이동권에 관한 한 교통약자 중심이었으며, 편의시설과 복지기금 조성에 있어서 특별시·광역시보다 그 도입비율이 높았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할 경우 대도시는 장애인 이동권 중심,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중심이었다. 체육시설만이 대도시의 도입비율이 높을 뿐 나머지 편의시설, 출산지원, 중증장애인 지원, 장애인복지기금 모두 중소도시의 도입비율이 가장 높았다. 농어촌이 가장 높은 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

여성 및 아동청소년 프로그램의 경우 폭력예방에 관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며, 특별시·광역시 내 기초자치단체가 도내 기초자치단체보다 그 도입비율이 높았고, 대도시가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보다 높았다. 여성 및 아동청소년 프로그램과는 반대로 노인 프로그램은 도내 기초자치단체가 특별시·광역시 내 기초자치단체보다 그 도입비율이 높았다. 그렇지만 장수수당의 경우 농어촌의 도입비율이 가장 높았고, 효도수당의 경우 중소도시의 도입비율이 가장 낮았다. 대도시의 장수수당 및 효도수당 도입비율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회적 약자 중 4대 사회복지서비스 대상 그룹을 제외한 인구집단 중에서는 재향군인 지원프로그램의 도입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 프로그램의 경우 특별시·광역시 내 기초자치단체가 도내 기초자치단체보다 도입비율이 높았다. 지역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경우 대도시가 가장 높고 중소도시가 최저 수준이었다.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도 특별시·광역시 내 기초

자치단체의 도입비율이 도대 기초자치단체의 도입비중보다 높고, 대도시의 도입비중이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도입비중보다 높았다. 그러나 중소도시의 도입비율이 가장 낮았다.

탈북주민 프로그램과 비정규직 프로그램의 경우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처럼 특별시·광역시 내 기초자치단체의 도입비율이 도내 기초자치단체보다 높았다. 두 프로그램은 공히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경우 대도시가 가장 높고, 중소도시가 다음이었으며, 농어촌이 가장 낮았다. 농촌총각 결혼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의 명칭이 반영하듯이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도입비중이 특별시·광역시 내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보다 높았다. 지역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경우 농어촌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중소도시였으며, 대도시가 가장 낮았다.

<표 5> 지역유형에 따른 사회적 약자 프로그램 도입 비교

그룹	프로그램	특별시·광역시 중심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구분		
		특별시·광역시	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장애인	장애인이동권	장애인이동	교통약자	장애인이동	교통약자	교통약자
	장애인체육시설	1	2	1	2	3
	장애인편의시설	2	1	3	1	2
	장애인출산지원	1	2	2	1	3
	중증장애인지원	1	2	2	1	3
	장애인복지기금	2	1	3	1	2
여성·아동	아동여성폭력방지	1	2	1	2	3
노인	장수수당	2	1	3	2	1
	효도수당	2	1	3	1	2
기타	다문화가정지원	1	2	1	3	2
	탈북주민지원	1	2	1	2	3
	비정규직지원	1	2	1	2	3
	재향군인예우	1	2	1	3	2
	농촌총각결혼지원	2	1	3	2	1

[표 안에 있는 번호 1은 가장 도입비중이 높고, 3은 가장 낮음.]

사회적 약자 프로그램의 내용분석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별로 어느 정도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요약 결과는 <표 6>과 같다. 장애인 이동권의 경우에는 장애인으로 한정하는 지역과 교통약자로 그 범위를 넓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 아동 및 여성을 모두 포함하는 프로그램으로 그 대상에 차이를 두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중증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의 경우 자립지원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와 목욕탕 서비스나 교통도우미로 한정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 밖의 장애인 프로그램, 즉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출산지원 및 장애인복지기금은 그 내용에 있어 차이가 없고 대동소이한 수준이었다.

여성아동폭력방지 프로그램과 탈북주민 지원 프로그램은 시책에서 구체성과 포괄성의 차이가 있을 뿐 내용상으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장수수당이나 효도수당의 경우 장수노인 및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정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라는 전제는 같지만 연령의 경우 대부분의 하한선이 35세이지만 상한선은 50세인 경도 있었고 상한선을 두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효도수당의 경우 3대로 한정하는 경우도 있었고, 4대로 한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수당액수 및 지급방법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은 정착지원 성격의 프로그램이었지만 일부에서는 자녀의 입학금 지원에 한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 프로그램도 지역 간 대동소이한 수준이었다. 비정규직의 경우 대부분 지자체내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복무규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내 거주하는 비정규직의 권익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다. 농촌총각 결혼지원 프로그램은 국제결혼 소요비용이라는 관점에서는 내용이 같지만 지원 대상 연령 및 지원액수에서는 지역 간 편차가 있었다.

사회적 약자 지원 프로그램으로써 사회적 포용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6개 장애인 프로그램, 여성·아동 폭력방지 프로그램의 경우 적합성이 높았다. 다문화가정 및 탈북주민지원, 그리고 재향군인예우의 경우 사회적 약자의 사회적 포용 프로그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효도수당과 장수수당으로 구성된 노인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적합성이 높다고 주장하기 어려웠다.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에서도 전주시를 제외한 자치단체에서 사회적 약자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판단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 농촌총각 결혼지원의 경우에는 농촌총각의 편에서는 적합성이 높았지만 국제결혼으로 이주해온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사회적 배제를 야기한 문제로 인식될 수도 있었다.

〈표 6〉 내용분석에 따른 사회적 약자 프로그램별 공통점과 차이점 도입 비교

그룹	프로그램	내용의 공통점 차이점		사회적약자 적합성
		공통점	차이점	
장애인	장애인이동권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한정, 혹은 교통약자로 포괄규정	○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체육진흥 경비지원	지역간 대동소이	○
	장애인편의시설	설계도 및 진행사항 점검	지역간 대동소이	○
	장애인출산지원	장애인 여성출산 지원	지역간 대동소이	○
	중증장애인지원	장애인 지원	자립지원으로 포괄적 규정, 목욕탕 지원이나 교통도우미에 한정	○
	장애인복지기금	장애인 지원 기금조성/활용	지역간 대동소이	○
여성·아동	아동여성폭력방지	여성아동폭력방지에 관한 내용	시책의 포괄성 구체성에서 차이	○
노인	장수수당	장수노인 대상 수당 지급	연령, 수당액수 및 지급방법에서 차이	△
	효도수당	노인 모시는 대가족 지원	대수, 수당액수 및 지급방법에서 차이	△
기타	다문화가정지원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	일부는 자녀입학으로 한정	○
	탈북주민지원	탈북주민 정착 지원	시책의 포괄성 구체성에서 차이	○
	비정규직지원	지자체 근무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지역거주 비정규직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
	재향군인예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지역간 대동소이	○
	농촌총각결혼지원	국제결혼 소요비용 지원	지원대상 연령 및 지원액수에서 차이	○와 X

표 안에 있는 ○은 적합성이 가장 높고, △은 보통이며, X는 가장 낮음.

V. 결론

사회적 약자 지원 프로그램은 뚜렷한 지향성으로서 사회적 배제를 완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이다(Percy-Smith, 2000). 따라서 사회적 약자 프로그램은 그

내용이 사회적 배제의 완화와 연결될 때 그 적합성이 높은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사회적 약자 그룹을 하나로 묶어서 볼 경우 프로그램의 종류의 다양성은 있었고, 사회적 약자의 대상 집단도 다양했다. 비록 성적 소수자와 병력자에 대한 프로그램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대부분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기초자치단체의 도입비율이 매우 낮았다. 이 프로그램만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82%가 도입하였고 나머지 프로그램의 도입비율은 모두 50% 미만이었다.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도입비율이 48%로서 50%선에 근접한 상태이지만 나머지 프로그램의 경우 그 비율이 20% 내외 수준이었다. 대체로 다양성은 있지만 도입수준은 낮은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

프로그램별로 보면 장애인 지원프로그램의 다양성이 가장 높았고,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의 완화와 연결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사회적 약자 프로그램으로서의 적합성이 높았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볼 경우 도입수준이 낮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여성이나 아동의 경우 폭력방지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의미있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노인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저소득층 조손가정의 사회적 배제의 가능성은 높지만(한경혜 외, 2009) 지방자치단체가 채택한 노인 프로그램은 효도수당과 장수수당에 그치고 있었다. 효도수당처럼 대가족에 대한 지원은 있지만 조손가정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프로그램의 매우 취약한 수준이었다.

기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다문화 가정 지원의 경우 일부 자치단체에서 자녀입학 지원에 한정하고 있기는 해도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사회경제적 정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비록 그 도입수준이 50%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 프로그램으로서 적합성이 높은 프로그램이었다. 탈북주민의 경우도 정착지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과 마찬가지로 그 도입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었다.

다문화 가정 지원 프로그램은 결혼을 근거로 외국에서 이주한 여성이 포함된 가정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지만 외국에서 이주해 온 인구집단 중에는 외국인 노동자도 포함된다. 외국인 근로자 역시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 일 수밖에 없는 집단(김태수, 2010)이다. 이 집단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회적 약자 범주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그 프로그램이 없는 상황이다. 이 그룹에 대한 프로그램의 채택이 필요하다.

비정규직의 경우 전북 전주시 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비정규직 지원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복무규정에 관한 내용이어서 사회적

약자 프로그램으로서의 성격이 매우 약한 것이 문제였다. 사회적 약자로서 비정규직 지원 프로그램은 저임금 일자리의 확대와 근로빈곤층의 양산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원호, 2011)에서 국가가 나서야 하지만 비정규직 그 자체는 지역경제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지역의 노동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비정규직 프로그램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복무규정이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는 비정규직 지원 프로그램으로 그 성격이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농촌총각 결혼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 연령기준이 상대여성의 연령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한국의 농촌총각의 결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이주해오는 여성들의 인권 침해가 야기될 수 있다는 또다른 사회적 약자를 만들어내는 문제를 안고 있다. 국제결혼의 지원 연령을 35세 이상에서 50세 또는 그 이상으로 설정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농촌총각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상식에 따라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강신욱·김안나·박능후·김은희·유진영, (2005). 사회적 배제 지표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곽병선·김희숙, (2009).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 지원방안 고찰: 전북 군산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연구, 8(2), 1-22.
- 국가인권위원회, (2006).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국가인권위원회
- 김순규, (2011). 다문화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청소년학회, 18(3), 247-272.
- 김원호, 2011.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첨단교통서비스 전략. 국토, 354, 35-42.
- 김응철·김태호, 2009. 교통약자의 환승을 고려한 K경로탐색 알고리즘 개발. 서울시연구, 10(2), 147-159.
- 김인영·박관영·이인희, (2008). 사회적 약자로서 '비정규직' 보도에 나타난 쟁점주기와 발전단계 및 프레임 특성 분석.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6(1), 49-78.
- 김진욱, (2011).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 정책학과 미래사회, 2011년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 180-200.
- 김태수, (2010). 외래인에 대한 한국형 사회적 배제 지표의 개발 시론.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4), 367-393.
- 배화숙, (2005).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업복지 차이 연구: 한국노동패널(KLIPS) 6차 자료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1(1), 217-237.
- 윤정향, 2003.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보호 배제의 원인에 관한 시론적 고찰. 사회보장연구, 19(1), 59-83.
- 이신혜, (2009). 교통약자 만족도 분석을 통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시연구, 19(1), 197-208.
- 이영아, (1999).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도시시설 정비방안. 도시문제, 34, 77-90.
- 이원호, (2011). 광역대도시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사회적 배제의 형성: 노동시장 변동의 지역성에 대한 이해.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4(2), 129-142.
- 이정은·조미형, (2009). 사회적 배제 집단의 잠재적 유형 분류 및 성별과 학력에 따른 차이분석. 사회복지정책, 36(3), 79-103.
- 정광호·최슬기·장윤희, (2009). 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회서비스 전달과정 분석: 위탁과 바우처 방식의 비교. 한국공공관리학보, 23(4), 231-255.
- 정상우·이국운·신옥주·조소영·정문식·김성태·김동련, (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조소영. (2009).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제언(提言): 부산광역시의 소수자·사회적 약자 관련 조례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50(1), 1-26.
- 한경혜·주지현·정다겸. (2009). 생애과정 관점에서 본 저소득 조손가족 조부모의 사회적 배제 경험과 적응. 한국가족복지학, 26(1), 87-121.
- Burchardt, Tania, Julian Le Grand, David Piachaud (1999). Social Exclusion in Britain 1991-1995.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33(3), 227-244.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1997). First Report on Economics and Social Cohesion 1996. Luxembourg: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Kenyon, Susan. (2003). Understanding Social Exclusion and Social Inclusion. *Municipal Engineer*, 156(2), 97-104.
- National Academy of Social Insurance (NASI). (2009). *Strengthening Social Security for Vulnerable Groups*.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of Social Insurance
- Newman, William W. (1973). *American Pluralism: A Study of Minority Groups and Social Theory*. New York: Harper & Row.
- Percy-Smith, Janie. (2000). Introduction: The Contours of Social Exclusion. In: Janie Percy-Smith, *Policy Responses to Social Exclusion: Toward Inclusion?* Buckingham, UK: Open University Press. pp. 1-21.
- Reichert, Elisabeth. (2006). *Understanding Human Rights*. Thousands Oak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 Sen, Amartya. (2000). *Social Exclusion: Concept, Application, and Scrutiny*. Manila, Philippines: Asian Development Bank.